

\_\_\_\_\_주유소 사업자(이하 '지원대상 사업자')는 알뜰주유소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석유공사)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고, 향후 알뜰주유소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(이하 '각서')를 제출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각서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을 지원받는 주유소의 사후관리(준법의무 등)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일반기준)** 지원대상 사업자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모든 사항은 '알뜰주유소 지원운영지침'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지원운영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국석유공사(이하 '공사') 유권해석에 따른다.

**제3조(허위시공 금지)**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와 시공과 관련되어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 부적정한 시공을 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공내역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.

**제4조(현장점검 협조)**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설개선 후 공사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시 시공내역에 대한 세부설명 및 자료제공 등 공사 직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의무이행 사항)**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후 향후 다음의 경우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.(단, 의무이행 기간은 1년으로 함)

1.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,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정기관(지자체)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.(지침의 '지원조건 위반 제재사항'준용)  
\* 다만,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
2. 알뜰주유소 풀을 내리지 않는다.(주유소 귀책사유에 의한 공급계약 해지 포함)
3.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후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알뜰주유소 운영에 관한 지위를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.
4. 지원대상 사업자가 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인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, 양도인의 의무이행 기간 1년의 잔여기간을 의무이행 만료일로 하여 새로이 각서를 제출한다.

